충청남도종합체육대회 관련 규정

충청남도 종합체육대회 규정

제정 2021. 07. 22.
개정 2022. 03. 28.
개정 2022. 10. 31.
개정 2023. 05. 31.
개정 2023. 12. 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및 개최근거) ① 충청남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정관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종합체육대회를 매년 도내에서 개최한다.

② 종합체육대회는 모든 도민에게 스포츠를 보급하고, 스포츠정신을 고취하여 도민의 체위를 향상시키며 지역체육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명랑하고 질서있는 사회기풍을 조성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체육대회”라 함은 체육회가 주최하는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충청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를 말한다. <개정 2023.12.26.>
2. “충청남도민체육대회”라 함은 체육회에 가입된 회원종목단체 중 일부 종목의 학생부, 일반부를 대상으로 일정 장소에 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경기를 진행하는 대회를 말하며, 약칭은 “도민체전”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3. “충청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라 함은 체육회에 가입된 회원종목단체 중 일부 종목의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정 장소에 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경기를 진행하는 대회를 말하며, 약칭은 “충남어르신체전”으로 한다.

제3조(종합체육대회에 관한 권리) 체육회는 종합체육대회의 조직,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과 개·폐회식, 주경기장과 모든 경기장 내에 설치되는 광고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 단, 이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 4 조(대회 횟수) ①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의 대회 횟수는 당해 연도와 개최 횟수로 표기하고 충청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의 대회 횟수는 당해 연도로 표기한다. <개정 2023.12.26.>

제 5 조(개최시기 및 기간) ① 충청남도민체육대회는 매년 상반기 중에 개최하며 대회기간은 4~5일로 한다. <개정 2023.12.26.>

② 충청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 기간은 1~2일로 한다.

③ 국내 종합체육대회가 도내에서 개최되거나 전국종합체육대회 등 개최시기 및 본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 6 조(경기행사제한)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개최일 10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시군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와 그 산하단체는 종목별 경기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체육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 7 조(대회상징마크) ① 종합체육대회 대회기의 상징마크는 충청남도 상징마크를 중앙에 두고 월계수 잎의 원으로 제작한다.

② 게양용 대회기는 가로 540센티미터, 세로 360센티미터로 제작하고, 개최지 전달용 대회기는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제작한다.

③ 대회 기간 중에는 대회기를 주경기장에 게양하여야 하며, 개회식 시 게양하고 폐회식에 본회 회장에게 반납한다.

제 8 조(대회표어) ① 종합체육대회 표어는 종합체육대회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개최지는 대회표어를 주경기장과 각 종목별 경기장에 게시하되,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9 조(대회가) 종합체육대회 대회기 게양, 개·폐회식 후에는 〝충남의노래〞를 사용한다.

제10조(대회명칭 등에 관한 권리) 대회명칭, 대회상징마크, 대회표어에 관하여 체육회는 독점적인 지적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타인이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종합체육대회위원회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대회엠블럼, 대회마스코트 및 대회구호) 개최지는 종합체육대회의 홍보 및 대회특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체육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대회엠블럼, 대회마스코트 및 대회구호를 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종합체육대회위원회

제12조(설치) 체육회 정관 제38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종합체육대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1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종합체육대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2. 종합체육대회의 개최지 선정에 관한 사항
3. 종합체육대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4. 기타 종합체육대회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5. 위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② 위원회에서 결정된 방침은 본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조직) ①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11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관련 부지사 및 도 체육업무관련 과장, 도교육청 체육업무관련 과장, 당해 연도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개최지 체육회장 및 부단체장, 본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개정 2022.03.28., 2023.12.26.>

③ 위촉 위원은 본회 이사, 시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학계를 포함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정관 제31조 제1항에 따라 체육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3.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록선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중 위원이 재직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된 사항의 안건 심의에서 해당 위원은 제척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 원 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　　원 11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장은 체육업무관련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촉 위원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체육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해당 직위를 상실하였을 경우 위원의 자격도 상실한다.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개최지 체육회장 및 부단체장의 임기는 당해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종료일까지 한다.

제3장 개최지 선정

제17조(유치신청) ① 충청남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시군체육회는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개최지의 자치단체장의 보증서와 함께 대회개최 27개월 전에 체육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대회개최 기준일은 6월 30일로 한다. <개정 2023. 12.26.>

1. 각종 경기장의 시설현황 및 관람자 수용계획
2. 경기장 시설계획과 공인을 필요로 하는 경기장은 회원종목단체의 경기장 시설 설계에 대한 의견서
3. 직접 사용되는 소요예산의 조달방법(연차별 예산 확보 및 집행계획 포함)
4. 보증서(개최지 시장·군수)
5. 선수단 숙박 및 수송과 관련한 계획
6. 기타 대회 유치와 관련된 사항

② 개·폐회식 경기장이 소재하는 주 개최지는 인구규모, 숙소(호텔 포함) 그리고 그 지역의 기반시설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치신청은 동대회 최종 개최연도가 앞선 시군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 시군이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유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차기 개최 예정 시군순으로 유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신청을 하지 않은 시군의 개최연도는 맨 뒤 순번으로 한다. <개정 2022.10.31.>

④ 천재지변 등으로 대회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당해 연도에 대회일정을 연기하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기가 불가능할 경우 취소 당시의 개최지에서 다음연도에 개최한다.

제18조(개최지 결정) ① 개최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회개최 24개월 전에 확정한다.<개정 2022.10.31.>

② 위원회는 유치신청 시군이 제출한 유치신청서류에 대한 의견청취나 현장실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에서 실시한 의견청취 및 현장실사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회에서 최종 개최지를 선정한다.<개정 2022.10.31.>

④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개최지로 선정된 시군체육회는 차기년도 충청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6.>

제19조(개최지 시·군의 의무) ①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개최가 결정된 시군체육회

는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의 결재를 득한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개최 계획서를 개최지가 결정된 후 1개월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승인조건과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6.>

② 1항에 의거하여 제출된 계획서의 내용수정, 계획의 변경이 있을 시 보완 제안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세부 실행 계획서 승인) 개최가 결정된 시군 및 체육회는 대회 준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수시로 체육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개·폐회식 등 중요행사 일정이 포함된 세부 실행 계획서를 대회개최 3개월 전까지 체육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장 개최지 준비위원회

제21조(준비위원회) ① 종합체육대회 개최 시군에 대회준비를 위해 준비위원회를 설치한다. 단,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준비위원회를 차기년도 충청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 준비위원회로 승계할 수 있다.<개정 2023.12.26.>

제22조(구성시기)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준비위원회는 대회 개최 1년 6개월 이전에, 충청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 준비위원회는 대회 개최 5개월 전에 구성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12.26.>

제23조(구성)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약간 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되며, 제25조에 명시한 부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4조(위원 등의 선임방법) ①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개최지의 자치단체장이 되며, 위원장은 개최 시군의 체육회장을 포함한 부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한다.

② 준비위원회에는 대회 운영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 등을 둘 수 있다.

제25조(집행위원회) ① 준비위원회는 실질적인 대회 준비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개최 시군 관련 인사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준비위원장이 겸하며, 부위원장은 개최지의 자치단체 부단체장, 개최 시군교육장 및 개최 시군체육회장 또는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이를 임명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실무부서는 개최지 실정에 맞게 조직하되, 경기부, 식전행사부, 의전초청부, 인력물자부, 홍보부, 자원봉사부, 입퇴장관리부, 안전관리부(질서포함), 교통경비부, 환영안내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실무부서의 장의 직급은 개최지 실정에 맞게 정한다.

제26조(해산) 준비위원회는 대회 준비기간과 대회기간 중 운영되며 종합체육대회 종료 후 해산한다.

제5장 경기종목

제27조(충청남도민체육대회의 경기종목) ① 경기종목은 정식종목과 시범종목으로 나뉘며, 정식종목은 종합채점에 포함되는 종목과 비채점 종목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② 정식종목이 종합채점에 반영되는 비율은 필요에 따라 종합체육대회위원회에서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③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정식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2.26.>

1. 채점종목(24): 검도, 게이트볼, 골프, 궁도, 그라운드골프,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복싱, 수영, 씨름, 야구, 역도, 유도, 육상, 족구,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파크골프, 체조, 합기도 <개정 2023.05.31., 2023.12.26.>
2. 비채점종목(6): 농구, 댄스스포츠, 산악(등산), 승마, 자전거, 패러글라이딩 <개정 2023.05.31.><<개정 2023.12.26.>

④ 신설종목(세부종목을 포함한다.)은 아래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종목에 한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종목으로 실시한다.<개정 2023.12.26.>

1. 10개 이상 시·군종목단체가 가입된 종목일 것
2.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연1회 이상 당해 도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도단위대회 개최실적이 있을 것
3. 세부종목의 경우 10개 이상 시·군의 출전이 가능한 종목일 것
4. 감염병, 천재지변 등에 의한 경우 2호에 예외를 둘 수 있다.

⑤ 제3항 1호에 해당하는 종목(세부종목을 포함한다.) 중 해당 연도 충청남도민체육대회에 8개 미만의 시군이 참가한 종목(세부종목 포함)은 그 다음 해부터 시범종목으로 강등한다. 단, 기초종목(수영, 육상, 체조) 및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은 종합체육대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 할 수 있다.<개정 2023.12.26.>

⑥ 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신설 또는 강등된 시범종목은 시범종목이 된 지 2년연속하여 대회에 10개 이상 시군이 출전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식종목으로 승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⑦ 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신설 또는 강등 된 시범종목이 3년 평균 8개 미만의 시군이 참가한 경우에는 폐지되며, 이후 2년 이내에는 재신설할 수 없다. <개정 2023.12.26.>

제28조(충청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의 경기종목) ① 충청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의 경기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축구, 체조, 탁구, 테니스, 파크골프

② 충청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의 경기종목 선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충청남도체육회에 가입된 회원종목단체 중 10개 이상의 시군 회원종목단체가 결성된 종목
2. 연 1회 이상 회원종목단체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종목별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종목

③ 경기종목에 대한 조정(확대 등)은 시군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종합체육대회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29조(부별 및 종별, 세부종목 등) 각 경기종목의 부별 및 종별, 실시 세부종목 등은 제38조에 의한다.

제30조(경기종목 등의 채택 및 취소) 경기종목, 부별, 종별 세부종목의 채택 및 취소는 종합체육대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장 대회임원

제31조(임원구분) 종합체육대회의 임원은 대회임원, 회원종목단체 임원, 개최지 준비임원, 개최지 집행임원으로 구분한다.

제32조(대회임원) ① 대회임원은 체육회 회장이 위촉하며 대회기간 중 활동한다.

② 대회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대회장은 체육회 회장으로 한다.
2. 부대회장은 체육회 부회장과 개최 시군체육회 회장이 한다.
3. 임원은 대회에 참가한 시군체육회 회장, 회원종목단체장, 체육회 임원 등으로 한다.
4. 집행위원장은 체육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5. 집행부위원장은 개최 시군체육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6. 집행위원은 대회에 참가한 시군체육회 사무국장, 회원종목단체 사무국장 등으로 한다.
7. 소청심의위원회는 위원장에 담당운영 부장(도체육회), 유관기관(도청, 교육청) 팀장, 관련부서 팀장(도체육회), 개최지 사무국장을 포함한 약간 명으로 한다.
8. 대회운영부는 도체육회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33조(해당회원단체 임원) 종합체육대회의 경기종목별 임원은 체육회가 정하는 부서에 따라 해당회원종목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구성한다.

제34조(개최지 준비위원 및 개최 집행임원) 개최지 준비임원과 개최지 집행위원은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른다.

제7장 소청 및 처리

제35조(소청심의위원회) ① 종합체육대회에 참가한 임원, 선수 및 응원단에 부정, 불미한 사실이 있거나, 제38조 경기운영에 따른 종목별 경기에 대한 소청 및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소청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한다.

제36조(참가금지) ① 종합체육대회에 참가신청 후 이유 없이 불참하거나 경기에 출전하였다가 도중에 기권한 개인선수 및 단체는 차기 종합체육대회에 참가를 금할 수 있다.

② 경기에 출전하였다가 도중에 기권한 개인선수 및 단체는 대회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시군체육회를 통해 기권 사유서(일시, 장소, 주요사유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상기 ②항에도 불구하고 기권 사유가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차기 종합체육대회 참가를 금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해당선수 및 단체에 대한 대회참가 심의를 할 경우에는 해당 선수 및 관계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37조(규정준수의무) ① 준비위원회 등 종합체육대회를 준비하거나 운영하는 관련단체는 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해당단체가 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육회의 별도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8장 대회운영

제38조(참가요강 및 내규) 대회참가, 경기종목, 경기운영, 경기장, 채점 및 시상, 개·폐회식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참가요강 및 내규로 정한다.

제39조(평가회 개최) 종합체육대회의 준비단계부터 종료 시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개선사항을 차기대회에 반영하기 위한 평가회를 개최한다.

부 칙(2021. 07.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3.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0.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최지 선정) 이 규정 제17조 3항의 단서는 2025년 개최지 선정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 05.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 내규

제정 2019. 1. 29.
개정 2019. 12. 23.
개정 2021. 6. 28.
개정 2023. 5. 31.
개정 2024. 1. 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충청남도 종합체육대회 규정 제38조에 따라 종합체육대회의 경기를 조직적이고 체계 있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회운영

제2조(예선대회) 시군체육회는 종합체육대회에 참가 시군 대표선수를 선발하기 위하여 예선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3조(참가신청) 시군별 예선대회에서 대표로 선발된 개인 및 단체는 대회 참가요강에서 정한 기일 내에 해당 시군체육회장이 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경기종목별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예선대회를 거치지 아니한 자를 참가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체육회장이 결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제4조(대회참가) ① 종합체육대회는 시군에서 신청한 개인 및 단체가 참가하며 대회참가요강의 적용을 받는다.

② 충청남도민체육대회에 참가신청 후 토너먼트 세부종목 중 4개 시군 미만이 참가를, 기록경기 세부종목 중 5명 미만이 참가를 하였을 경우 그 해당되는 종합점수 채점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개정 2024.1.15.>

③ 충청남도민체육대회에 참가신청 후 토너먼트 세부종목 중 4개 시군 이상이 참가를, 기록경기 세부종목 중 5명 이상이 참가신청을 한 후 일부 선수가 아무런 사유 없이 불출전 하였을 경우에도 제2항을 적용하며, 그 불출전한 단체(선수)는 충청남도 종합체육대회 규정 제29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개정 2024.1.15.>

제5조(참가요강) ① 종합체육대회의 일반사항, 시상, 참가자격, 경기종목별 참가는 체육회가 별도로 정한 참가요강에 의한다.

② 종합체육대회의 참가요강은 종합체육대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대회방법) 종합체육대회의 경기는 시군 대항으로 한다.

제7조(경기방법 및 경기규칙) 종합체육대회의 경기는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경기규칙에 따르되, 제3장 경기방법과 같이 운영한다.

제8조(경기진행) ① 종합체육대회의 모든 경기는 해당 회원종목단체 책임 하에 이를 진행한다.

② 대회본부는 대회기간 중 해당 회원종목단체가 경기운영을 잘못하여 이에 대한 다툼이 발생되거나 경기 참가자들이 경기장 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하여 더 이상 경기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회본부의 결의로 해당 경기의 모든 경기일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경기의 모든 경기 일정이 취소된 종목은 당해 연도 종합체육대회에서 실시하지 않은 종목으로 간주하며, 충청남도민체육대회의 종합채점에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2024.1.15.>

④ 대회 중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종목의 경우(대회 중 심판부정, 선수폭력, 학부모의 경기장 점거 등) 해당 시군에 대하여는 차기 대회 출전제한, 해당 종목에 대하여는 1차 발생 시 경고조치, 2차 발생 시 시범종목 전환, 3차 발생 시에는 종합체육대회 경기종목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12.23.>

⑤ 제4항에 따라 종합체육대회 경기종목에서 제외된 종목은 3년이 경과하여야 경기종목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

제9조(경기일정) ① 종합체육대회 경기일정은 해당 회원종목단체가 작성하며 체육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전국체전의 출전 등 선수 대다수가 참여하여 종합체육대회 기간 중 경기진행이 어려운 종목은 대회 기간 전에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경기심판) ① 경기심판은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심판규정에 의하되 그 해당 회원종목단체가 지정한 심판원이 담당한다.

② 심판의 판정에 대한 소청은 당해 경기종목의 심판부장이 이를 처리한다.

③ 해당 경기종목 심판부장의 결정에 대한 상소가 있거나 기타 결정되지 않은 심판판정에 대한 사항은 대회본부 소청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한다.

제11조(무자격선수 출장) ① 단체경기 또는 개인경기 단체전, 개인경기종목에 있어서, 대회 개막 이후 무자격선수가 출장하였을 때에는 당해 단체는 몰수 처리한다. 출장이라 함은 경기시작 전 해당경기 단체의 규정에 따라 선수명단을 제출하는 시점을 말한다.<개정 2024.1.15.>

② 참가 신청하여 경기에 실제로 출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③ 무자격 선수 출장이 확인되어 몰수 처리되었을 경우, 소속 시군은 당해 종목에 대하여 차기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당해 종목이라 함은 단체경기, 개인경기 단체전 종목은 당해 종별을, 개인경기종목은 당해 세부종목 및 체급을 말한다.

④ 무자격 선수라 함은 참가신청이 되지 않은 선수, 참가신청 선수와 출전 선수가 다른 경우, 선수 출신이 비선수 출신의 자격으로 출전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9.12.23.>

제12조(지위변동) 무자격 선수가 출장하였을 때에는 무자격선수 또는 그 소속 단체는 즉시 몰수 처리하고 그 선수 또는 단체가 획득한 모든 지위는 무효로 하되, 실격 선수 또는 단체에 패한 상대방의 지위는 회복되지 아니한다.

제3장 경기방법

제13조(경기방법) 종합체육대회의 경기는 채점종목과 비채점종목으로 나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1. 채점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궁도, 그라운드골프,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수영, 씨름, 야구, 역도, 유도, 육상, 족구, 체조,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파크골프, 합기도 <개정 2023.5.31., 2024.1.15.>
2. 비채점종목: 농구, 댄스스포츠, 산악, 승마, 자전거, 패러글라이딩 <개정 2023.5.31. 2024.1.15.>
3. <삭제 2023.5.31.>
4. 기록경기
   가. 개인 기록경기: 역도, 육상, 수영
   나. 단체 및 개인 기록경기: 궁도, 골프, 그라운드골프, 자전거,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개정 2023.5.31.>

다. 개인 점수경기: 보디빌딩, 승마
라. 단체 및 개인 점수경기: 댄스스포츠, 볼링, 산악, 체조
5. 토너먼트경기
가. 단체 경기: 게이트볼, 농구, 배구, 야구, 족구, 축구
나. 개인경기 단체전: 검도,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개정 2023.5.31.>
다. 개인경기(체급경기 등): 복싱, 유도, 씨름, 태권도, 합기도

제14조(대진추첨) ① 토너먼트경기의 대진추첨은 시드를 배정한 후 시군 대표자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② 대진추첨은 각 시군 대표자 입회하에 추첨으로 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체육회가 결정하며, 각 회원종목단체의 결정에 따를 수도 있다.

제15조(단체경기 시드배정) 단체경기(개인경기 단체전경기 포함)는 시드제를 적용하며, 시드는 개최지팀에 배정하되, 별표 1의 '1'의 위치에 배정한다.

제16조(개인경기 시드배정) 토너먼트 경기로 진행하는 개인경기는 대회 개최지 선수에만 시드를 배정하며 시드는 별표 1의 '1'에 배정한다.

제17조(경기진행 순서) 토너먼트는 별표 1의 경기진행 순서에 따라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승패결정) 토너먼트경기에 있어서 동위자 순위전(3, 4위전, 5, 6, 7, 8위전 등)을 하지 아니하며 무승부일 경우 참가요강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 회원종목단체 경기규칙에 의거하여 승패를 결정한다.

제 4 장 경기기록 관리

제19조(경기기록 보고) 종합체육대회의 모든 경기기록은 체육회가 제정한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경기부장과 기록 책임자가 확인·서명을 한 후 대회기록시스템에 신속·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의2(경기영상 촬영 및 외부공개) 종합체육대회의 종목별 경기장 내에서

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며, 공공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될 수 있다.

제 5 장 심판 및 소청

제20조(심판운영 및 배정) 종합체육대회의 경기심판은 해당 회원종목단체 별 심판위원회규정에 의하되 그 해당 회원종목단체 별로 지정한 심판원이 담당한다.

제21조(소청처리) ① 충청남도종합체육대회규정 내 경기운영내규 제11조 제3항에 따라 처리되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심판부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회 소청심의위원회가 처리한다.

② 시군체육회는 소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소청심의위원회는 시군체육회 임원 3명과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심판부장만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제22조(소청판결) 대회본부 소청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며, 결정에 대한 이의는 제출할 수 없다.

제 6 장 경기장 배정 및 운영

제23조(경기장 배정 및 사용승인) ① 종합체육대회의 종목별 경기장을 배정함에 있어 개최 시군 내 체육시설을 최대한 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 개최 시군 이외 타 시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대회개최 3개월 전까지 해당 시군 체육시설관리 주체와 협의한 후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을 체육회로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개최지는 경기장 배정안과 함께 경기장의 조명, 안전망, 차광막, 관중수용능력, 바닥재의 상태, 득점판 등의 경기진행시설 및 경기진행에 필요한 각종 통신시설, 비품 등을 명시한 각 경기장별 도면을 당해 대회개최 5개월 전까지 체육회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사용 확인과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28.>

③ <삭제 2021.6.28.>

④ 개최지는 제1항에 따라 경기종목별 경기장을 배정함에 있어 참가하는 종목의 인원을 감안하여 적정한 숙박이 가능한 곳으로 배정해야 한다.

제24조(경기장 규격) 개최지는 해당 경기종목의 회원종목단체 경기규칙에 의한 정규규격을 갖춘 경기장을 준비하여야 하며, 관람객 수용인원의 사전 검토 및 적정 배정으로 경기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5조(시설 및 경기용기구 등) 개최지는 해당 회원종목단체 관계규정에 의한 경기시설 및 경기용기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경기장 출입신분증) 개최지는 경기장 질서를 위하여 대회임원, 경기임원, 참가선수단, 기자단, 대회준비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경기장 출입신분증을 발급해야한다.

제27조(안전사고 예방 의무) ① 개최지는 경기운영내규 제23조 제2항에 따라 배정된 경기장 승인이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의료진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개최지는 공·승인이 완료된 경기장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2019. 1. 2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종합체육대회위원회에서 의결 받을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 2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종합체육대회위원회에서 의결 받을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6. 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종합체육대회위원회에서 의결 받을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5. 3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3. 5.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 1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4. 1. 15.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토너먼트 경기순서 및 시드배정

범례 : (　　)안의 숫자는 경기진행 순서

1은 시드번호 A, B, C…는 추첨 표시

3개팀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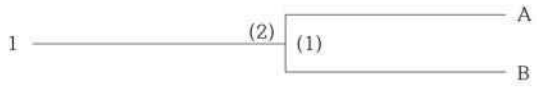

4개팀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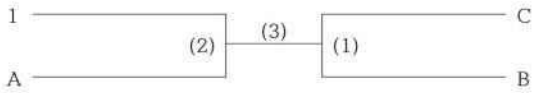

5개팀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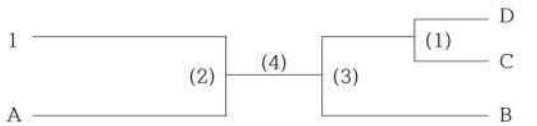

6개팀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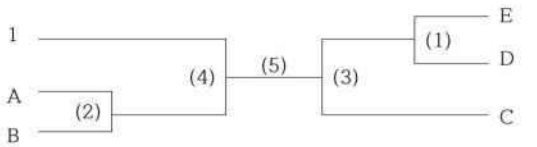

7개팀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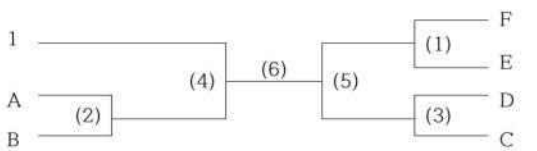

8개팀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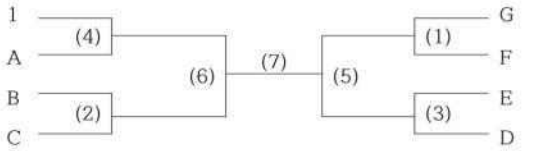

9개팀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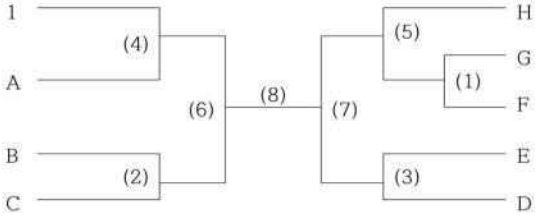

10개팀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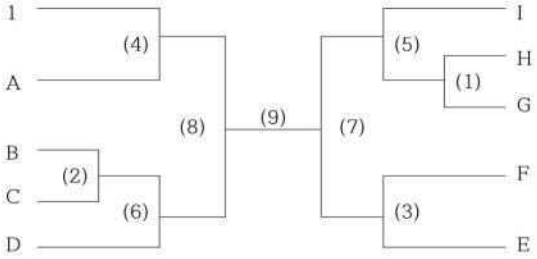

11개팀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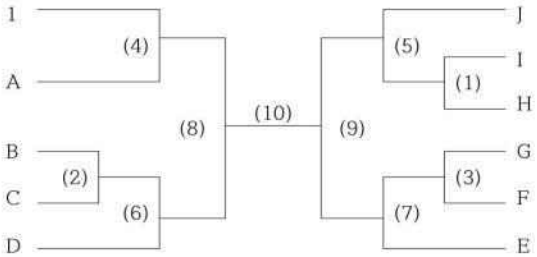

12개팀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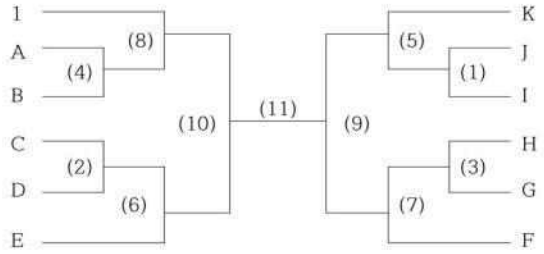

15개팀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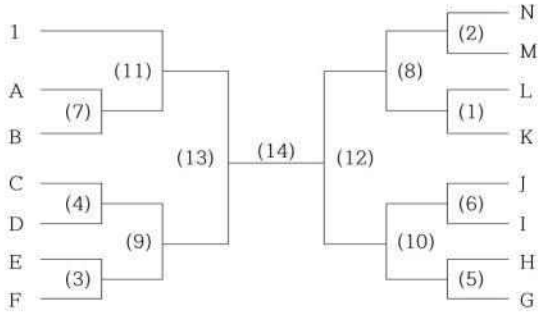

13개팀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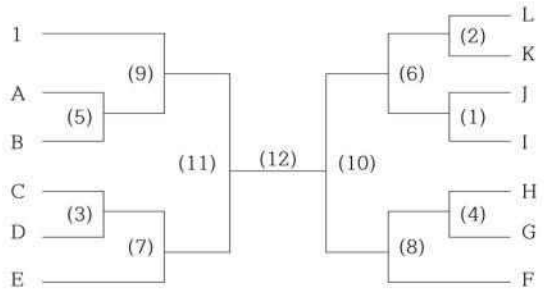

14개팀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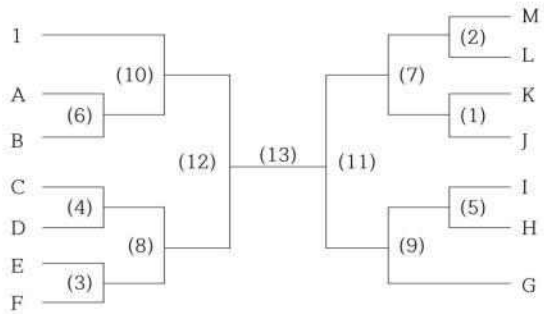

종합체육대회 개·폐회식 운영 내규

제정 2019. 1. 29.
개정 2019. 12. 23.
개정 2021. 6. 28.
개정 2024. 1. 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충청남도종합체육대회 규정 제38조에 따라 충청남도민체육대회의 개·폐회식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초청자와 참가선수단, 일반관람자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5.>

제2장 개·폐회식 운영

제2조(초청) ① 개회식 초청범위 및 초청석 운영은 개최지 개·폐회식 경기장 규모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② 개회식 초청은 충청남도체육회장과 개최지 체육회장 명의로 하며, 폐회식 초청은 충남체육회장과 개최지 체육회장 명의로 한다.<개정 2019.12.23.>

제3조(개·폐회식 일정 및 장소) ① 개회식은 첫날 18시에 개식 통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그 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남도체육회(이하 "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개회식에는 우천 대비, 종목별 경기진행 및 국제경기 참가 등을 제외하고는 종목별 경기를 진행하지 않는다.
③ 폐회식은 최종일 경기종료 후에 거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개·폐회식 장소는 주 개최지의 주경기장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최지가 주 개최지에서 개·폐회식을 개최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를 제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개회식 구성 및 운영) ① 개회식은 식전공개행사, 공식행사 및 식후공개행사로 구성한다.
② 개회식의 식전·식후공개행사는 개최지의 실정에 맞게 구성하되 총 5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개회식과 관련된 모든 행사는 체육회가 진행한다.

제5조(개·폐회식 운영계획) ① 개최지는 충청남도민체육대회의 개·폐회식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개최 3개월 전까지, 세부행사계획은 1개월 전까지 체육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개·폐회식 운영계획은 체육회의 개·폐회식 운영요령에 의한다.<개정 2024.1.15.>

② 개최지가 종합체육대회의 개·폐회식 행사를 직접 하지 아니하고 대행업체로 하여금 행사를 대행하고자 할 경우 체육회와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개·폐회식 공식행사의 식순) ① 개회식(오후, 야간) 및 폐회식 공식행사의 식순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2.23.>

(오후개회식 식순)

- 귀빈입장	
- 개식통고	(1분)
- 선수단 입장	(25분)
- 국기에 대한 경례	(1분)
- 애국가 제창	(2분)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분)
- 개회선언	(1분)
- 환영사	(1분)
- 대회기 게양	(2분)
- 성화점화	(5분)
- 대회사	(2분)
- 격려사	(2분)
- 축 사	(5분)
- 선수·심판대표선서	(2분)
- 선수단 퇴장	(7분)

(야간개회식 식순)

- 귀빈입장	
- 개식통고	(1분)
- 선수단 입장	(25분)
- 국기에 대한 경례	(1분)
- 애국가 제창	(2분)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분)
- 개회선언	(1분)
- 환영사	(1분)
- 대회기 게양	(2분)
- 대회사	(2분)
- 격려사	(2분)
- 축 사	(5분)
- 선수·심판대표선서	(2분)
- 성화점화	(5분)
- 선수단 퇴장	(7분)

(폐회식 식순)

- 개식통고	(1분)
- 국민의례	(1분)
- 성적발표	(5분)
- 종합시상	(5분)
- 축가	(2분)
- 폐회사	(2분)
- 대회기강하	(2분)
- 대회기전달	(5분)
- 환송사	(2분)
- 폐회선언	(1분)
- 성화소화	(2분)

제7조(개 · 폐회식 사용음악) ① 개최지는 개 · 폐회식 공식행사에 필요한 공식음악을 직접 연주 또는 녹음 음악으로 제공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② 애국가, 국기에 대한 경례곡 및 묵념곡은 관계법규에 따른다.

③ 귀빈입장 시의 음악, 팡파르 음악은 체육회와 사전협의하여 승인된 곡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선수단 입장 시 연주되는 음악은 행진하는 선수단이 절도 있고, 질서 있는 행진대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에 맞는 음악을 사용하되, 동일 연주대의 음악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입장대형) ① 개회식 때 행진은 대회표지판, 태극기, 충남체육회기, 대회기, 기수단, 참가시군 선수단, 심판단 순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선도악대가 행진대형을 유도 입장할 수 있다.

② 개최지는 각종 표식판을 제공하여야 하며 관중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재질과 규격을 갖춰야 한다.

③ 시군체육회 표지판은 체육회가 승인한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태극기 앞에는 어떠한 퍼레이드기도 입장할 수 없다.

⑤ 대회기는 지휘자 1명을 포함하여 6명이 운반하여 게양하여야 한다.

⑥ 기수단은 해당 회원종목단체기, 개최지 회원종목단체기, 시 · 군체육회기를 들고 행진하여야 한다.

제9조(선수단 입장) ① 각 시군선수단의 입장대형은 시군표시판, 기수, 선수단(150명 이상)의 순서로 구성된다.

② 시군표식판 요원은 개최지가 제공하여야 하며, 기수는 해당 시군선수단 중 1인으로 한다.

③ 선수단 입장순서는 차기개최지가 첫 번째로 입장하고, 이후 개최지에서 거리가 먼 시군 순서로 하며, 맨 마지막에 개최시군, 심판단 순으로 한다. 다만, 선수단 정열대형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체육회가 선수단 입장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국민의례) ① 국민의례는 관계법령에 의한다.

② 태극기 게양대는 주경기장 본부석 정면에 장식판 상판기준 5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석 정면에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체육회와 협의 후 게양대를 설치해야한다.

제11조(개회선언) ① 종합체육대회 개회선언은 개최지 체육회장이 한다.<개정 2019.12.23.>

② “제○○회 ○○대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가 끝남과 동시에 팡파르 음악을 연주하여야 한다.

제12조(환영사) 환영사는 개최지 자치단체장이 1분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3.>

제13조(대회기 게양) ① 충청남도민체육대회기는 충청남도 종합체육대회 규정 제7조를 준용하여 제작하여 사용한다.<개정 2024.1.15.>

② 대회기는 개회식 때 “충남의 노래”를 합창하는 가운데 주경기장에 게양하여 대회기간 중 계속 게양하여야 한다.<개정 2021.06.28.>

③ <삭제 2019.12.23.>

④ 개최지는 주경기장 내에 15m 이상의 대회기 게양대를 설치하되 대회기가 지속적으로 휘날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성화) ①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성화 채와 장소는 개최지에서 별도로 정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충청남도내 및 개최지를 순회 봉송하여야 한다.<개정 2024.1.15.>

② 성화최종주자는 주경기장 내 트랙을 일주한 후 성화대에 점화·하여야 한다.

③ 개최지는 성화운영계획을 체육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대회사) 대회사는 체육회장이 한다.<개정 2019.12.23.>

제16조(격려사, 축사) 격려사는 충청남도지사가 하고, 축사는 도의회의장, 도교육감이 각각 2분 이내로 한다.<개정 2019.12.23.>

제17조(선수·심판대표선서) ① 선수 및 심판대표는 참가선수와 심판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대회장에 대하여 선서하여야 한다.

② 선수대표와 심판대표가 선서할 때에는 참가시군 기수단은 선서대를 반원으로 에워싸고 도열하여야 한다.

〈선수〉

선 서

제○○회 ○○대회에 참가한 선수일동은 대회규정을 준수하여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선수대표 ○○○

〈심판〉

선 서

본인은 모든 심판을 대표하여 체육인의 정신으로 경기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심판대표 ○○○

제18조(행사요원의 선정) ① 공식행사요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개최지는 대회 개최 45일 전까지 체육회에 복수 추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참가선수대표 2인(남, 여)
2. 심판대표 1인
3. 성화 최종주자 1인

② 성화 최종주자는 선수 또는 선수출신인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19조(폐회식 운영) ① 폐회식은 주경기장에서 최종 경기가 종료된 직후(17시) 거행하여야 한다.

② 성적발표는 충청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이 한다.

③ 종합시상은 시상운영요령에 의한다.

④ 폐회사는 체육회장이 한다.

⑤ 대회기 강하 시 “충남의노래”를 합창하여야 한다.<개정 2021.06.28.>

⑥ 대회기 전달은 개최지 체육회장이 도 체육회장에게 반납하고, 도 체육회장은 이를 차기 개최지 체육회장에게 전달하여 보관케 한다.<개정 2019.12.23.>

⑦ 환송사는 개최지 자치단체장(체육회장)이 한다.

⑧ 폐회선언은 개최지 체육회장이 한다.<개정 2019.12.23.>

“제○○회 ○○대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제3장 충청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폐회식 운영

제20조(충청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폐회식 운영) 충청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폐회식은 동 내규를 준용한다.

부 칙(2019. 1. 29.)

(시행일) 이 내규는 종합체육대회위원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 1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4. 1. 15.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채점 및 시상 내규

제정 2019. 1. 29.
개정 2024. 1. 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규정 제38조에 따라 충청남도민체육대회의 시군별·부문별·종목별·세부종목별 순위 결정을 위한 채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5.>

제2조(채점구분)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채점은 종합채점, 경기부문채점, 세부종목채점으로 구분한다. 종합채점은 채점종목의 시군별 획득점수만 포함한다.<개정 2024.1.15.>

제3조(시상구분) 충청남도민체육대회의 시상 종류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15.>

1. 종합시상
   가. 1위: 우승기, 도지사배
   나. 2위: 준우승기, 도지사배
   다. 3위: 3위기, 도지사배
2. 경기종목별 종합시상
   가. 1위: 도지사배, 상장
   나. 2위: 도지사배, 상장
   다. 3위: 도지사배, 상장
3. 경기종목별 세부종목시상
   가. 1위: 금메달, 상장
   나. 2위: 은메달, 상장
   다. 3위: 동메달, 상장
4. 특별상 시상
   가. 성취상 1위: 도지사배
   나. 성취상 2위: 도지사배
   다. 성취상 3위: 도지사배

라. 모범선수단상(1시군): 도지사배

5. 시범종목시상

가. 1위: 금메달, 상장

나. 2위: 은메달, 상장

다. 3위: 동메달, 상장

제2장 종합채점

제4조(종합순위 결정) ① 충청남도민체육대회의 시군 종합순위는 시군의 종합점수로 결정한다.<개정 2024.1.15.>

② 시군의 종합점수는 채점종목 경기부문별 종합점수의 합계로 결정한다.

제5조(동점일 경우의 순위결정) 종합순위를 결정할 때 종합점수가 같은 시군이 있으면 상위입상 경기부문 수가 많은 시군을 상위로 결정한다.

제3장 경기부문 채점

제6조(경기부문의 채점) ①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시군의 경기부문 종합점수는 종목별 종합점수로 결정한다.<개정 2024.1.15.>

② 종목별 종합점수는 참가 시군의 수에 따라 결정하되, 세부종목 채점합계가 최상위 시군을 1,500점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50점씩 감산하여 결정한다.

③ 세부종목 채점합계는 제4장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제7조(전국체육대회성적 합산) ① 시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직전년도 하계전국체육대회 성적을 1개 부문으로 채점하여 합산한다.

② 채점방법은 전국체육대회 소속종별 총점대비 획득점수 비율 순으로 최상위 시군을 1,500점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50점씩 감산하여 배점한다.<개정 2024.1.15.>

③ 2개 이상의 팀을 육성하는 경우 소속종별 총점대비 획득점수 비율이 가장 높은 팀의 점수를 반영한다.<개정 2024.1.15.>

제8조(역전경주대회성적 합산) ① 해당연도 3.1절 기념 충청남도지사기 시군대항 역전경주대회의 성적(순위)을 1개 부문으로 채점하여 시군 종합점수에 합산한다.

② 채점방법은 참가 시군의 수에 따라 결정하되, 최상위 시군을 1,500점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50점씩 감산하여 인정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 개최 시 에는 채점에서 제외한다.

제9조(동순위 배점) 동순위 시군이 2 이상일 때에는 해당 동위수에 해당하는 차위 점수를 합산하여 이를 동위수로 등분 배점한다.

제10조(동점일 경우의 순위결정) 경기부문 순위를 결정할 때 경기부문 점수가 같은 시군이 있으면 상위입상 세부종목 수가 많은 시군을 상위로 결정한다.

제11조(경기기록 책임자) ① 경기부문별 채점은 회원종목단체 주관으로 실시한다.

② 회원종목단체는 대회본부(기록부)의 기록을 확인하고 채점하여 기록부장에게 제출한다.

제4장 세부종목 채점

제12조(기록경기 채점) ① 기록경기의 채점은 세부종목별 8위까지의 입선자만 채점하되 1개 시군에 2인 이상 입선할 때에는 상위자만 채점한다.(궁도, 볼링, 보디빌딩, 역도 제외)

구분 \ 등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개인전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단체전	16점	14점	12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② 궁도, 볼링 경기종목은 단체기록이 최하위 시군을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하여 채점한다.

③ 보디빌딩 경기종목은 체급별 8위까지 채점한다. 한 체급에 2명이 참가하여 8위 이내의 성적을 거둔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모두 인정한다.

등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배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④ 역도 경기종목은 합계, 인상, 용상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채점하되 1개 시군에 2인 이상이 입선할 때에는 상위자만 채점한다.

구분 \ 등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합 계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인상, 용상	3점	2점	1점	-	-	-	-	-

제14조(토너먼트경기 채점) ① 토너먼트경기의 종별(체급별) 채점은 다음과 같이 5위까지만 채점한다.

구분 \ 등위	1위	2위	3위	5위
배 점	8점	7점	5.5점	2.5점
개인 또는 단체수	1	1	2	4

② 토너먼트경기는 시드제를 적용하며 시드는 개최지 팀에 배정하되 개최지 팀이 불참, 몰수, 실격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탁구 개인전 및 족구 학생부는 종목별 참가요령에 따라 채점한다.

제15조(비채점종목의 채점) 비채점종목은 종목별 참가요령 채점방법에 따라 채점한다. 단, 종목별 종합시상은 실시하되 시군 종합점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6조(동순위 배점) 세부종목 및 체급별 경기에서 동순위 시군이 2 이상일 때에는 동위수에 해당하는 차위 점수를 합산하여 이를 동위수로 등분 배점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기권, 몰수, 불출장 채점) ① 기권, 몰수 또는 불출장할 때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② 경기규칙에 따라 경기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의 기권과 경기몰수는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사유서를 충청남도종합체육대회 규정 제35조의 소청 심사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시행세칙) ①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채점에 관하여 이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4.1.15.>

② 기타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채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종합체육대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24.1.15.>

부 칙

제1조(충청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 채점 및 시상) 충청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는 종목별 채점 및 시상으로 한다.

제2조(시행일) 이 내규는 종합체육대회위원회에서 의결 받을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1. 1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4. 1. 15.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민체육대회 특별상 내규

제정 2019. 1. 29.
개정 2024. 1. 15.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채점 및 시상내규 제1장 제3조의 특별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5.>

제2조(시상) ①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규정 제1장 제3조와 같이 시상한다.<개정 2024.1.15.>
② 도민체육대회 특별상시상은 폐회식에서 실시한다.

제3조(성취상) 성취상은 전년 대비 득점이 많이 향상된 시군 순으로 결정한다.

제4조(모범선수단상) ① 모범선수단상은 참가선수단이 경기질서를 유지하여 단합된 모습으로 모범이 되는 시군에 시상한다.
② 모범선수단상 시상대상 시군이 종합시상, 성취상 대상 시군일 경우에는 차순위 시군을 시상할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회) ① 모범선수단상 시상 대상 시군 선정을 위하여 특별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임원장이 되며, 위원은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개최종목 회원종목단체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1.15.>

제6조(채점) ① 모범선수단상 시상 대상은 가장 많은 득점을 획득한 시군을 선정한다.
② 모범선수단상은 위원이 기록한 채점표에 의하며 기록되지 않은 채점표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7조(보칙) 충청남도민체육대회 특별상 시상에 관하여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종합체육대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24.1.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종합체육대회위원회에서 의결 받을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 1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4. 1. 15.부터 시행한다.